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6.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44호로 2021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체계 구축 및 구민들의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나.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조항 신설

(안 제2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다. 상위법령에 맞춘 평생학습협의회 관련 조문 정비

(안 제5조~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라.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마. 수료증 발급 신설(안 제19조의2)

바. 조문 체계 간결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지구 수정(안 제2조, 안 제20조)

사.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결과(2021. 5. 6. ~ 5. 26.):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YDP미래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체계 구축 및 국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함.
- 안 제2장을 신설하여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평생교육이용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평생교육이용권은 현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국가(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 한도 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바우처임.

그래서 본 조례안은 현행법상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평생교육이용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평생교육법」(2021. 6. 8.개정, 2021.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업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본 개정조례안은 비록 법률 개정 이전부터 논의되고 추진되었으나 급부행정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경우라면 이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법령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에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방법, 지원의 내용 등을 국가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조례 개정이 가능함.

그러나 본 조례안의 취지와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법의 시행일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부칙에 “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제 출 안	수 정 안	비 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시행일에 맞춘 조정

- 안 제4장은 YDP미래평생학습관(도신로4길 20) 개관에 맞추어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규정임.

안 제13조제2항에 평생학습관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안 제15조에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 상위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8조부터 제19조의2까지 수강료 및 수강료의 면제, 반환, 수료증의 발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YDP미래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맞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보이며,

다만, 조례 개정 추진 중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조례상 평생교육이용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평생교육법(2021.6.8. 일부개정, 2021.12.9.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6. 8.>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1. 6. 8.>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 ④ 생략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

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